

이천시시도와다른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(안) 심사보고

2004. 12. 20(월)

산업건설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4년 12월 9일 이천시장 제출

나. 회부일자 : 2004년 12월 9일

다. 상정일자 : 제74회 이천시의회(제2차 정례회)

제1차(2004. 12. 17) 산업건설위원회 상정
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박재한)

가. 제안이유

- 이천시시도와다른도로등의연결에관한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이천시도와 다른 도로, 통로, 기타의 시설등과 연결함에 있어, 허가기준, 허가절차, 설치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도로구조의 보존과 원활한 소통 및 교통 안전을 확보하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이 조례는 시도의 우측으로 진·출입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·통로, 기타의 시설을 우측에 연결하는 경우에 적용함(안 제3조).
- 시도에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도로 등의 연결 허가를 신청함(안 제4조).
-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은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 가 정비되어 있거나 연결허가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예정인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연결하도록 함으로써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다른 도로 등의 무분별한 연결을 방지함(안 제5조).

- 일정기준 미만의 곡선구간과 일정기준 이상의 경사구간에서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은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허가를 하지 아니함(안 제6조)
- 연결로 등의 접속부분 포장방법, 변속차로, 배수시설, 분리대, 길어깨, 부대시설 등의 설치기준을 상세히 정함(안 제7조 내지 제12조).
- 연결로 외에 차량의 진·출입 로가 없는 경우에는 모든 시설공사를 함에 있어 연결도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도록 함(안 제13조).
- 시장은 도로 등의 연결허가에 관한 사무를 읍·면·동장에게 위임함(안 제14조).
-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절차, 연결공사의 세부설계기준 등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을 준용함(안 제15조)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박규하)

- 교통의 발달과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시도에 다른 도로,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켜 도로구조의 보존과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을 기하고자
- 안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
- 안제3조 및 제4조는 연결할 수 있는 적용범위와 연결계획서에 의한 연결허가신청을 규정하였으며
- 안제5조 내지 제7조는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및 연결 허가의 금지구간과 연결로 등의 포장 등을 규정하였고
- 안제8조 내지 제12조는 변속차로, 배수시설, 분리대, 길어깨 부대시설 등의 기준을 규정하였으며
- 안제13조 및 제14조는 공사의 우선시행관계와 읍·면·동장에게 위임하는 조례안으로써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만장일치)

7. 기타사항 : 없 음